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규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82 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이규민·임오경·노웅래

이성만 • 황운하 • 도종환

윤준병 • 민형배 • 전재수

김정호 · 이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'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라고 명시하고 있는바,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.

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 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4 항). 법률 제 호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 중 "500백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23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	4
처리한 자는 <u>500백만원</u> 이하의	<u>500만원</u>
벌금에 처한다.	